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<mark>관</mark> 권 번호 2350

제안연월일: 2025년 3월 7일 제 안 자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상위법령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)의 개정 취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 추가 범위를 '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'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'북한이탈주민 가정'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지원의 범위 규정 및 안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규정에서 '북한이탈 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'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함.
- 부칙의 시행일을 상위법령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)의 시행일(2025.4.23.)과 동일하게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"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
- 2. 생활고충·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
- 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
- 4. 의료 및 돌봄 지원
- 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
- 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
- 7. 북하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· 체육행사 개최
- 8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시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- 1.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
- 2.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- 3.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- 이 조례는 2025. 4. 23. 부터 시행한다.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
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		<u>о́</u>)
<u>음과 같다.</u>	<u>.</u>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개정안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. "북한이탈주민 가정"이	<u><삭 제></u>
	란 제1호에 따른 북한이	
	탈주민과 혼인·입양·혈	
	연관계 등으로 친족관	
	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	
	거를 함께하는 공동체	
	<u>를 말한다.</u>	
2. "북한이탈주민 지원단	<u>3</u> . (현행 제2호와 같음)	<u>2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u>
체"란 북한이탈주민에		
대한 지원을 목적으로		
하는 비영리 법인, 기관		
또는 단체를 말한다.		
제4조 <u>(지원의 범위)</u> ① <u>북한</u>	제4조 <u>(지원 대상 및 범위)</u>	제4조 <u>(현행과 같음)</u>
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	①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	
<u>위</u>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<u>주민 및 북한이탈주민</u>	
	<u>가정으로 하며, 지원 범</u>	
	<u>위</u>	
1.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	1. (현행과 같음)	1. <u>언어·기초학력 및 사</u>
회적응 교육		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
		<u>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</u>
		육지원
2. 생활고충·법률·취업	2. 생활고충·법률	 2. (개정안과 같음)
등의 상담 및 지원		
3.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	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	3. (개정안과 같음)
지원	생활편의 제공	
	0 8 6 1 1 1 0	

<u> <신 설></u>	<u>4. 의료 및 돌봄 지원</u>	4. (개정안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	5. (개정안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	6. (개정안과 같음)
	통합 및 북한이탈주민	
	에 대한 인식개선	
<u>4</u> .· <u>5</u> . (생 략)	<u>7</u> .・ <u>8</u> . (현행 제4호 및 제5	7.・8. (개정안과 같음)
	호와 같음)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	제7조(협의회의 기능)	제7조(협의회의 기능) <u>(현</u>
회는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	북한이탈주민 및	<u>행과 같음)</u>
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	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	
대하여 심의한다.	<u>에 관한 다음</u>	
1. 북한이탈주민의 취업	1. <u>취업</u>	1. (현행과 같음)
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		
항-		
2. 북한이탈주민의 교육	2. 교육지원	2.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
<u>지원</u> 에 관한 사항		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3.・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	3.・4. (개정안과 같음)
	부칙	부칙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	이 조례는 2025. 4. 23. 부

시행한다.

<u>터 시행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언어 ·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
- 2. 생활고충 · 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
- 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
- 4. 의료 및 돌봄 지원
- 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
- 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
- 7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· 체육행사 개최
- 8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- 1.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
- 2.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- 3.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25. 4. 23. 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(생략)	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 음)
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	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<u>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</u>
2. <u>생활고충·법률·취업</u> 등의 상담 및 지원	<u>녀의 교육지원</u> 2. <u>생활고충·법률</u>
3.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	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 편의 제공
<u><신 설></u>	<u>4. 의료 및 돌봄 지원</u>
<u> <신 설></u>	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
<u><신 설></u>	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
	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
	<u>식개선</u>
<u>4</u> .· <u>5</u> . (생 략)	<u>7</u> .⋅ <u>8</u> 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
	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(생략)	제7조(협의회의 기능) (현행과 같
	<u> </u>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</u> 에	2.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
관한 사항	<u>교육지원</u> 에 관한 사항
3. • 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